貿易學會誌 제42권 제2호
2017년 4월 pp.205-225

논문투고일 2017. 02. 21
심사완료일 2017. 04. 13
게재확정일 2017. 04. 15

신용장거래에서 운송서류 불일치에 대한 지급거절*

Payment Refusal against Discrepancy in Transport Document under L/C Transaction

이 정 선** Jung-Sun Lee

목 차

Ⅰ. 서 론
Ⅱ. 운송서류 불일치와 지급거절
Ⅲ. 지급거절통지에 관한 판례분석
Ⅳ.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초록

본 연구는 신용장거래에서 불일치서류에 대한 은행의 지급거절통지의 절차를 한·중 판례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한·중 무역거래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한국 기업과 신용장을 개설하는 우리나라 은행들이 서류심사 결과로서 지급거절을 통지함에 있어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과 신용장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제언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고찰한 판례는 중국 매도인이 개설은행을 상대로 중국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개설은행의 지급거절통지가 UCP 600 제16조 (c)항 (ⅱ) (ⅲ)의 내용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한 중국법원의 판결이다. 본 판결을 볼 때, 우리나라 기업들과 신용장 개설은행들은 첫째, UCP 600 제16조 (c)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하자에 대한 통지의 내용을 자세하게 기재해야 한다. 둘째, 신용장 계약에서도 무역계약 마찬가지로 준거법에 대한 합의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한·중거래에서 중국법원의 편파적인 판결과 더불어 외국법원의 판결이 중국에서 집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분쟁

* 이 논문은 2016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대학회계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글로벌무역통상학과 조교수

해결 방식으로 중재를 활용하는 것이다. 신용장 개설 시 중재조항을 삽입하여 법적인 효력을 갖도록 하고, 국제신용장중재센터나 DOCDEX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을 권고한다.

〈주제어〉 신용장통일규칙, 지급거절, 선하증권, 용선계약선하증권, 국제표준은행관행 ISBP 745, 국제신용장중재센터, 신용장분쟁전문위원회, 신용장 분쟁해결 전문성 규칙

Ⅰ. 서 론

국제무역거래에서 신용장을 이용한 결제방식의 비중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신용장과 관련한 분쟁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거래비중이 높은 한·중거래에서 신용장과 관련한 분쟁이 자주 목격되고 있고, 소송의 결과에 대한 불만족 또는 중국기업의 판결 결과 불이행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신용장거래에서 은행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대금지급을 약속한다. 그리고 은행은 대금지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서류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문면상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판단을 함에 있어서 신용장통일규칙(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이하 UCP 600이라 칭함)에 근거하여 판단하며, 보충자료로서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이하 ICC라 칭함) 은행위원회(Commission on Banking Practice)에서 채택하고 있는 국제표준은행관행(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이하 ISBP 745라 칭함)을 활용한다. 또한 은행은 서류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여 UCP 규정대로 제5은행영업일 이내에 서류 제시자에게 하자에 대한 적법한 통지를 진행해야 한다.

본 연구는 하자에 대한 개설은행의 지급거절통지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중국법원의 편파적인 판결을 검토하고, 우리나라 무역거래당사자들과 신용장 개설은행들에게 신용장 개설 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과 더불어 신용장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아울러 무역거래는 관행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소송보다는 중재라고 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있으나 신용장거래의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에 의존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사례 또한 소가 제기된 판례로 중국법원의 편파적인 판결로 인해 은행이 패소한 사건으로, 이에 본 연구는 한·중 신용장거래에서 중재방식을 이용한 분쟁해결을 제언하고자 한다.

신용장거래와 관련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많이 축적되어 있다. 특히 신용장거래에서 서류 불일치와 지급거절에 관한 연구는 규정과 더불어 판례를 중심으로 연구가 지속

적으로 진행되어져 오고 있다. 서류 불일치와 관련한 기존 연구동향을 보면, 서류심사 기준에 관한 연구가 다수 있다(이천수, 2000; 채동헌, 2002; 김영훈, 2003; 전순환, 2005; 강원진, 2007; Roberto Bergami, 2007; 조현정, 2008; 김종칠, 2008; 조현정, 2009; 김용일, 2013; 김상조·이재달, 2013; Rosmawani Che Hashim, 2013). 또한 본 연구의 주제처럼 지급거절통지와 관련한 연구도 몇몇 눈에 띄는데, 김철수(2013)는 거절통지의 형식적 요건을 UCP 600 제16조 규정에 근거하여 설명하면서 기존의 판례들의 입장 등을 중심으로 거절통지의 형식적 절차에 대해 논하였다. 이천수(2009) 또한 불일치성의 판단기준과 거절통지 이행을 위한 방법과 기간 등을 UCP 600 제16조에 근거하여 논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서류 불일치에 따른 지급거절통지의 절차에 대한 UCP규정 연구에 그친 부분을 확대하여 중국 판례를 중심으로 실제로 문제가 되었던 지급거절통지의 형식적 요건과 더불어 내용적 요건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 한·중 무역거래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한·중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 무역거래당사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신용장거래와 관련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여 신용장거래에서 한국기업과 한국의 신용장 개설은행이 신용장 개설 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논하고, 중국법원의 편파적인 판결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제Ⅱ장에서 운송서류의 불일치 기준과 지급거절과 관련된 UCP규정을 고찰하고, 제Ⅲ장에서는 판례 분석을 통해 개설은행의 지급거절통지의 절차와 시사점을 제시한다. 그리고 제Ⅳ장에서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Ⅱ. 운송서류 불일치와 지급거절

1. 운송서류 불일치의 판단 기준

신용장 결제방식에서 수익자는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지정은행(확인은행, 개설은행)에 제시함으로써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대금지급의 여부는 수익자가 제시한 서류를 은행이 검토하여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면 대금지급을 이행하게 된다. 이렇듯 은행의 대금지급의 판단기준은 바로 운송서류 및 기타 서류들의 신용장과의 일치여부이다. 은행은 서류 검토 시 UCP에 근거하여 심사하게 되는데, UCP 600 제14조 (a)항에서는 서류심사 기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지정에 따라서 행하는 지정은행, 확인은행(확인은행이

있는 경우) 그리고 개설은행은 서류가 그 문면상 조건에 일치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서류만을 근거로 하여 제시된 서류를 심사해야 한다. 또한 제14조 (b)항에서는 제시의 일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시일의 다음날부터 최대 제5은행영업일을 초과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c)항에서는 선적일 이후 21일보다 늦지 않게 그리고 신용장 유효기일 이내에 서류를 제시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운송서류와 관련한 UCP 규정은 19조(복합운송증권), 20조(선하증권), 21조(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 22조(용선계약부 선하증권), 23조(항공운송서류), 24조(도로, 철도 또는 내수로 운송서류), 제25조(특송배달영수증, 우편영수증 또는 우편증명서)가 있다. 그 중 실무에서는 용선계약선하증권의 판단과 관련하여 혼란이 계속되고 있고, 이에 ICC 은행위원회에서는 자신의 공식의견[1]과 DOCDEX(Documentary Credit Dispute Resolution Expertise)결정에 근거하여 용선계약선하증권의 판별기준을 제시하였다.[2] 또한 은행은 선하증권과 관련한 서류심사의 경우에는 UCP 600 제20조에 근거하여 판단한다. 제20조 (a)항에서는 선하증권이라는 명칭과 관계없이 제시되어야 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용선계약선하증권과의 구별을 위해 (a)항 (vi)호에서는 용선계약에 따른다는 어떠한 표시도 포함되지 않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ISBP 745[3]의 선하증권 파트에서는 UCP 600 제20조의 적용, 발행 및 서명, 본선선적부기, 적재항 및 양륙항, 환

1) 신용장통일규칙은 1933년 국제상업회의소(ICC) 은행위원회에 의해 처음 제정된 이래로 약 10년에 한 번씩 개정되고 있다. 동 은행위원회에서는 신용장통일규칙의 제정과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여러 은행들로부터 해석에 대한 질의에 답한다. 이 답변 내용은 일 년에 두 번씩 열리는 총회에서 심의되고 공식의견으로 채택되어 이후 은행 실무의 기준이 되고 나아가 법원에서 신용장통일규칙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매우 설득력 있는 자료로서 사용된다.

2) 첫째, 선하증권에 용선계약이 적용된다는 표시가 있으면 용선계약선하증권으로 간주된다. 둘째, BIMCO(Baltic and International Maritime Conference)에서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60개의 용선계약서가 서로 다른 코드를 선하증권에 표시하고 있지만 이들 선하증권에는 일반적으로 '용선계약이 적용될 수 있다'라는 표시가 있어 용선계약선하증권으로 간주한다. 또한 선하증권에 용선계약 적용의 '예정' 표시가 있어도 용선계약선하증권으로 간주된다. 셋째, 용선계약서 일자 표시를 기재하는 난이 공란이더라도 용선계약선하증권으로 간주된다. 넷째, 서류 제목보다는 내용을 중요시 하는 「신용장통일규칙」의 기본원칙이 반영되어 운송서류 표제가 '용선계약선하증권'이더라도 선하증권 본문에 용선계약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면 신용장거래에서 용선계약선하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다섯째, 선하증권에 용선계약이 적용된다는 표시가 없더라도 '운임이 용선계약에 따라 지급될 수 있다'는 표시가 있으면 용선계약선하증권으로 간주된다. 여섯째, 신용장에서 운송서류로 탱커 선하증권을 요구했다면 용선계약선하증권이 수리될 수 있다는 것이 '국제상업회의소'의 공식의견이다. 일곱째, 선하증권 뒷면에 용선계약이 인쇄약관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신용장거래에서 용선계약부 선하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UCP 600 제34조에 따라 은행은 선하증권의 이면약관을 심사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출처: 박세운, "용선계약부 선하증권 심사와 관련 당사자의 위험요인", The Banker, pp.78-80.〉

3) UCP와 함께 은행이 서류 검토의 국제표준을 결정하는데 가이드를 제공하는 중요한 참고자료로 최근 버전이 ISBP 2013, ICC Publication No.745이다. ISBP는 국제적 불일치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은행들에 의해 거부되어진 서류들의 수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출처: Rosmawani Che Hashim, "Principle of Strict Compliance in Letter of Credit(LC): Towards a Proper Standard of Compliance", Legal Network Series, CLI Law, 2013, p.11.〉

적 및 분할선적, 무사고 선하증권, 물품명세, 정정 및 변경, 운임 및 추가비용, 하나 이상의 선하증권에 의해 커버된 물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용선계약선하증권과 관련해서는 UCP 600 제22조를 적용해야 한다. 용선계약선하증권의 명칭과 관계없이 용선계약에 의한다는 표시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ISBP 745의 용선계약선하증권[4]은 "신용장이 용선계약 선하증권의 제시를 요구하고 있는 경우(charter-party transport document acceptable)" UCP 600 제22조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하여 UCP 600 제20조의 적용과 관련된 선하증권제시와 중복되는 혼란방지 및 용선계약선하증권의 적용 관행을 분명히 하고 있다.[5] 즉, 신용장에서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운송서류상에는 용선계약에 따른다는 표시가 없어야 하며(UCP 600 제22조 (a)항), 만일 용선계약에 따른다는 명시가 있다면 이는 신용장에서 용선계약운송서류를 요구하고 있거나 허용한 경우로 한정한다.[6] 또한 UCP 600 제22조 (b)항에서는 은행은 비록 신용장의 조건이 용선계약서 제시를 요구하더라도 용선계약서를 심사하지 않아도 됨을 규정하고 있다.

2. 하자서류에 대한 지급거절 관련 규정

은행은 제시된 서류에 대한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하자서류에 대한 지급거절을 할 수 있다. UCP 600 제16조에서는 하자있는 서류, 권리포기 및 통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제16조 (a)항에서는 지정에 의하여 대행하는 지정은행, 확인은행(확인은행이 있는 경우) 또는 개설은행은 제시된 서류가 조건에 불일치한다고 결정한 때는 지급이나 매입을 거절할 수 있다. 또한 (b)항에서는 개설은행은 제시된 서류가 조건에 불일치한다고 결정한 때는 자신의 단독판단에 의해서 개설의뢰인에게 하자 주장에 대한 포기를 협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제14조 (b)항[7]에 언급된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 즉, 제5은행영업일 안에 모든 절차가 완료되고 지급결정 여부를 제시자(지정은행, 매입은행, 확인은행)에게 통지해야 한다.

---

4) ISBP 745의 용선계약선하증권 파트에서는 UCP 600 제22조의 적용, 서명, 본선적재부기, 선적일, 선적항 및 양륙항, 원본 용선계약선하증권, 수하인, 분할선적, 무사고 용선계약선하증권, 물품명세, 정정 및 변경, 운임과 추가비용, 복수의 용선계약선하증권이 제시되어야 하는 물품의 인도, 용선계약서와 관련한 규정을 담고 있다.

5) 김동윤(2013), "국제표준은행관행(ISBP 745)의 주요개정사항 분석과 시사점", 「통상정보연구」, 제15권 제3호, pp.13~14 / 전순환(2005), "ISBP상의 복합운송서류의 일치성에 관한 심사기준", 「통상정보연구」, 제7권 제4호, p.228.

6) 김재우(2008), "ISBP 2007 상의 복합운송서류 수리가능요건", 「관세학회지」, 제9권 제3호, p.9.

7) 지정에 따라서 행하는 지정은행, 확인은행(확인은행이 있는 경우) 그리고 개설은행은 제시된 서류가 조건에 일치하는지를 결정하는데 서류제시일에 이은 최대한 제5은행영업일을 소요한다. 이 기간은 앞으로의 유효기일 또는 서류제시의 최종일과는 무관하다.

또한 (c)항은 지급거절통지에 관한 규정으로 지정에 의하여 대행하는 지정은행, 확인은행(확인은행이 있는 경우) 또는 개설은행이 지급이나 매입을 거절할 때에는 서류 제시자에게 단 한 번의 통지를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통지를 함에 있어서 하자 서류에 대한 거절통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ⅰ) 은행은 지급 또는 매입을 거절한다는 것 (ⅱ) 은행이 지급 또는 매입을 거절하는데 대한 각 하자 사항 (ⅲ) ⓐ 제시자의 추가지시가 있을 때까지 은행이 서류를 보관할 것이라는 사실 ⓑ 그 개설은행이 개설의뢰인으로부터 하자포기를 수령한 후 그것을 수락할 것을 동의할 때까지 또는 권리포기를 수락할 것을 동의하기 전에 제시자로부터 지시를 받을 때까지 서류를 보관하고 있다는 것 ⓒ 은행이 서류를 반환할 것이라는 것 ⓓ 은행이 사전에 제시자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는 사실 등이다.

아울러 (f)에서는 발행은행이나 확인은행이 본 조항의 규정에 따라 행동하지 아니한 경우, 은행은 서류가 일치하는 제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클레임을 제기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Ⅲ. 지급거절통지에 관한 판례분석

본 사건은 신용장 개설은행인 한국의 중소기업은행이 중국의 매도인이 제시한 서류 중 운송서류가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조건과 일치하지 않아 지급거절을 진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매도인이 중소기업은행을 상대로 중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중국 1심법원이 자국민에게 유리한 판정을 내린데 대하여 중소기업은행은 중국 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패소한 사건이다.[8] 이후 중소기업은행은 매도인에게 대금지급을 완료하고 한국의 수입업자인 한일스틸에게 소송[9]을 제기하여 중국법원과는 다른 관점의 판결을 이끌어냈다.[10]

8) 1심: 중화인민공화국 무석시 중급 인민법원(2009), 석민삼초자 제56호 민사판결 (中华人民共和国无锡市中级人民法院 (2009) 锡民三初字第56号民事判决)
2심: 중화인민공화국 강소성 고급 인민법원(2009), 소상외종자 제0003호 민사판결 (中华人民共和国江苏省高级人民法院 (2009) 苏商外终字第0003号民事判决)

9) 서울고등법원 2012. 11. 8 선고 2011나99858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113438 판결

10) 한국 대법원에서는 '용선계약선하증권이 제출되었음'이라는 문구가 불일치사항을 설명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준이 되는 대상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해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그 문언만으로는 알 수 없다는 중국법원의 판결은 논란이 여지가 있고, 기존의 지급거절통지에 다른 추가적인 기재 없이도 충분히 불일치사항을 명확히 기재한 통지로서 UCP 600 제16조 (c)항에 부합하는 지급거절통지가 된다고 판시하였다.

1. 사건의 개요

한일스틸(HANIL STEEL Co., 수입자)은 2008년 4월 25일 강소화서국제무역유한공사(수출자, 이하 화서공사로 칭함)와 철사봉 1,000킬로톤을 1킬로톤당 미화 875달러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화물 수입을 위해 2008년 4월 25일 한국중소기업은행(Industrial Bank of Korea, 개설은행)에게 신용장개설을 의뢰하였고, 중소기업은행은 UCP 600에 근거하여 신용장을 발행하였다.

신용장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용장번호 M0415804EU00139, 유효기일 2008년 7월 11일(추후 2008년 9월 30일로 조건 변경), 신청인 한일스틸, 수익자 화서공사, 신용장금액 미화 875,000달러, 매입방식(임의의 은행에서 공개 매입), 대금지급기한은 환어음 제시 후 150일(추후 180일로 조건 변경), 최종 선적일 2008년 6월 20일(추후 2008년 9월 15일로 조건 변경), 상품명세는 SAE 10B08 프리미엄 저합금 6.5.mm 철사봉 1,000킬로톤, 단가는 킬로톤당 미화 875달러, 제시할 운송서류는 서명한 상업송장 3통, 무사고해상선적선하증권 일체(Full set of clean on board ocean bills of lading)이다.

화서공사는 2008년 8월 22일에 중국 운송회사(M/V TKB TAKANO운수)와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용선계약선하증권 일체를 교부받아 2008년 9월 4일 중국은행 강음지점(매입은행)에 신용장요구서류 일체와 함께 매입을 의뢰하였고, 매입은행은 2008년 9월 8일 중소기업은행에 송부하였다.

2008년 9월 8일 중소기업은행은 한일스틸에 매입은행으로부터 송부받은 운송서류(용선계약선하증권)가 신용장에 기재된 운송서류(무사고해상선적선하증권)와 일치하지 않는 지급거절 사유가 있음을 통지하고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것인지 여부를 문의하였고, 한일스틸은 2008년 9월 12일 지급거절통지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중소기업은행은 2008년 9월 12일 신용장의 문면상 제시되어야 할 운송서류인 '무사고해상선적선하증권'이 아닌 '용선계약선하증권'이 제출되었음을 이유로 '불일치점: Charter B/L Presented(용선계약선하증권이 제출되었음)'이라는 취지가 기재된 지급거절통지를 하였고, 2008년 9월 30일 운송서류를 매입은행에 반송하였다.

이에 화서공사는 2009년 2월 26일 중소기업은행을 상대로 중국 강소성 무석시 중급인민법원에 신용장대금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중국 법원은 화서공사가 용선계약선하증권을 제출한 것은 신용장에 기재된 운송서류와 불일치하므로 지급거절사유가 되나 중소기업은행이 매입은행에게 한 지급거절통지는 UCP 600에서 정한 방식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11]하여 2009년 10월 30일 중소기업은행으로 하여금 화서공사에게 신용장

11) 중국법원은 지급거절통지서에 '불일치점: 용선계약선하증권이 제출되었음'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에 기재된 대금 전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중소기업은행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인 중국 강소성 고급인민법원은 2010년 12월 16일 항소를 기각하였다.[12] 패소 판결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은 한일스틸에 신용장 대금을 결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한일스틸이 결제를 거부하여 중소기업은행은 2011년 3월 18일 화서공사에게 신용장대금으로 미화 874.807.50달러를 지급하고 운송서류를 교부받았다.[13]

2. 주요 쟁점사항

본 사건에서의 주요 쟁점 사항은 매도인이 제시한 운송서류인 선하증권이 용선계약선하증권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1심)과 은행의 불일치 서류의 판단 기준에 대한 심의(1심) 그리고 신용장 개설은행이 송부한 지급거절통지의 효력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개설은행이 지급거절통지서를 송부할 때 불일치점으로 기재한 부분 '용선계약선하증권이 제출되었음'이 UCP 600 제16조 (c)항 (ⅱ)호의 규정에 부합하는가를 판단하는 것이다(1심, 2심).

1) 제 1 쟁점사항

1심 판결에서 다룬 세 가지 쟁점 중 첫 번째는 UCP 600 제22조 (a)항의 규정에 근거할 때, 제시된 운송서류가 용선계약을 표명하는 문구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운송서류를 보건대, 화서공사가 제시한 운송서류의 우측 상단에는 "용선계약과 같이 사용(to be

---

기재만으로는 신용장이 요구하는 어떠한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UCP 600에서 정한 지급거절통지 방식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다음, UCP 600에서 정한 적합한 지급거절통지가 되려면 '불일치점: 무사고해상선적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음' 또는 '불일치점: 용선계약선하증권과 무사고해상선적선하증권이 일치하지 않음'이라고 기재해야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12) 우리나라는 3급 3심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중국은 4급 2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중국의 법원체계는 기층인민법원, 중급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 최고인민법원 등 4급 법원으로 구성되고, 1심 판결에 대해 단 한 번의 불복 기회가 있는 2심 종심제이다. 만약 1심 법원이 중급인민법원이었다면 2심 법원은 고급인민법원이 되고, 고급인민법원이 1심을 담당하였다면 최고인민법원이 2심 법원이 된다. 〈출처: 김호(2014), "중국 민사심급제도에 관한 연구", 「아주법학」, 제7권 제4호, pp.377-378.〉

13) 중소기업은행은 한일스틸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한국 법원에 신용장 대금 반환을 위한 소를 제기하였고, 한국 법원에서는 신용장에서 별도로 용선계약선하증권의 제시를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경우 용선계약선하증권의 제시는 그 자체로 UCP 600 제20조 (a)항 (ⅵ)호의 규정에 위반되는 적극적인 불일치에 해당하고, 신용장 개설은행이 이를 이유로 제시자에게 지급거절통지를 하면서 다른 추가적인 기재 없이 '용선계약선하증권이 제시되었다'는 취지만을 기재하더라도 그것은 개설은행이 불일치사항을 명확히 기재한 통지로서 UCP600 제16조 c항에 부합하는 지급거절통지라고 중국법원과는 다른 판결을 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2.11.8. 선고 2011나00858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113438 판결〉

used with charter-parties)"이라는 문구와 좌측 하단에는 "운임은 용선계약에 따름(freight payable as per charter-party dated 22 August, 2008)"이라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다. 즉, 운송서류 상에는 직접적으로 용선계약에 따름(subject to a charter party)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지만 "용선계약과 같이 사용" 및 "운임은 용선계약에 따름" 등의 표시는 이미 본 운송서류가 용선계약에 근거하여 발행되었음을 의미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이는 UCP 600 제22조 (a)항의 용선계약선하증권에 대한 설명과도 부합한다. 화서공사는 여전히 본 운송서류가 CONGEN BILL(to be used with charter-parties)이라고 주장하나 CONGEN BILL이 용선계약선하증권이 아니라는 관점은 법률에 근거할 때 설명력이 부족하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2) 제 2 쟁점사항

두 번째 쟁점사항은 화서공사가 제시한 용선계약선하증권이 신용장의 불일치사항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판단으로 은행의 서류검토 기준을 판단하였다. 중소기업은행은 화서공사가 제시한 용선계약선하증권이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해상선하증권이 아니고 선하증권의 이면의 운송조항들의 내용과 용선계약의 내용들이 신용장의 요구와 부합하지 않음을 불일치점으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화서공사는 UCP 600의 규정에 근거할 때, 은행은 선하증권 이면의 운송조항을 심의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용선계약을 심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은행이 제기한 불일치점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법원은 UCP 600 제 14조 (a)항의 규정에 근거할 때, 본 사건의 신용장은 무사고해상선적선하증권 전통(full set clean on board ocean bill of lading)을 요구하고 있으며, 화서공사가 제시한 본 선하증권은 앞에서 상술한 것처럼 용선계약선하증권이며, 용선계약선하증권은 신용장의 명확한 요구 또는 허락이 허용된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신용장 상에서 허용하지 않은 서류의 제시 즉 용선계약선하증권의 제시는 불일치 사항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3) 제 3 쟁점사항

마지막 쟁점사항은 중소기업은행이 효력이 있는 지급거절통지를 제시했는지의 여부에 관한 것으로, UCP 600 제16조 (c)항에 근거할 때, 지급거절 시 서류 제시자에게 단 한 번의 통지를 해야 하며 통지 시 다음의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ⅰ) 은행이 지급 또는 매입을 거절한다는 것, (ⅱ) 은행이 지급 또는 매입을 거절하는데 대한 각 하자 사항

(iii) (a) 제시자의 추가지시가 있을 때까지 은행이 서류를 보관할 것이라는 사실 …(중략)…을 포함해야 하며, UCP 600 제16조 (d)항에 따라 (c)항의 통지는 반드시 전신문이나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제시일로부터 제5은행영업일의 종료 전까지 다른 빠른 방식으로 이행되어져야 한다. 본 사건의 경우, 중소기업은행은 2008년 9월 8일 운송서류를 받고, 신용장조건과 불일치하다고 판단하여 2008년 9월 12일 UCP 600 제16조 (d)항 규정에 부합하게 매입은행에 전신으로 통지하였기 때문에 법원은 통지방식에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전신의 내용을 볼 때, 본 통지는 UCP 600의 지급거절통지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중소기업은행이 SWIFT MT 734[14] 서신양식을 사용하고 있고, 이 전신이 거절통지 번호를 가지고 있더라도 중소기업은행이 행한 거절의 의사 표시는 단지 형식상의 거절 통지일 뿐 즉, UCP 600 제16조 (c)항 (ⅰ)호의 규정에 부합할 뿐 UCP 600 제16조 (c)항 (ⅱ)호 (iii)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통지내용을 심의할 때 효력을 갖춘 거절통지는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즉, 은행은 반드시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와의 부합여부에 대해 기재해야 하며, 단지 증빙서류가 제출되었음을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본 사건의 경우, 신용장에서는 무사고선적해상선하증권 일체를 요구하고 있는데, 화서공사가 용선계약선하증권을 제시하였다면, 중소기업은행은 반드시 "무사고해상선적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음" 또는 "용선계약선하증권과 무사고선하증권이 일치하지 않음"이라고 기재해야 하며, "용선계약선하증권이 제출되었음"이라는 기재는 불일치점이 구체적이지 않고, 불완전하여 UCP 600 제16조 (c)항 (ⅱ)호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다시 말해, MT 734양식은 형식적인 통지요건에는 부합하나 UCP 600 제16조 (c)항의 규정에 근거할 때 사실에는 부합하지 않

14) MT 734 거절통지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s) 메시지는 제시된 서류를 신용장조건과의 일치여부를 문면상 검토한 결과 불일치 사항에 대한 서류매입의 거절을 통지하는데 사용된다. SWIFT는 금융기관 특히 은행들의 보안 메시지 플랫폼으로 SWIFT 메시지는 암호화된 형식으로 은행간 유효하고 믿을만한 소통수단으로 여겨진다.

MT 734 Field Specifications					
Status	Tag	Field Name	Status	Tag	Field Name
M	20	Sender's TRN	O	57a	Account With Bank
M	21	Presenting Bank's Reference	O	72	Sender to Receiver Information
M	34A	Date and Amount of Utilization	M	77J	Discrepancies
O	73	Charges Claimed	M	77B	Disposal of Documents
O	33a	Total Amount Claimed	O: Optional / M: Mandatory 〈출처:www.letterofcredit.biz〉		

으며, UCP 600 제16조 (f)항[15]의 규정에 따라 개설은행인 중소기업은행은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1심 법원은 판결하였다.

2심 판결에서는 1심 판결의 세 번째 쟁점사항에서의 지급거절통지의 불일치점으로 기재된 '용선계약선하증권 제출'이 UCP 600 제16조 (c)항 (ⅱ)호 규정에 부합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규정에 근거할 때, 거절통지는 반드시 지불책임을 거절 또는 증거서류에 의해 지불 거절이라는 각각의 불일치 규정에 근거하여 명시해야 한다. 또한 불일치점의 설명은 적어도 2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첫째, 어떤 종류의 증빙서류가 불일치하는지, 둘째, 그 증빙서류의 어떤 부분이 신용장 또는 기타 증빙서류와 부합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안의 지급거절통지는 단지 화서공사가 용선계약선하증권을 제출하였다고만 설명하고 있으며, 이 선하증권이 신용장의 어떤 항목과 불일치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그러므로 이 지급거절통지의 불일치점은 자세하지도 않고, 불완전하여 유효한 지급거절통지의 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였다. UCP 600 제16조 (f)항의 규정에 근거할 때, 중소기업은행은 신용장 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권리가 없으며, 중소기업은행의 항소 이유가 성립하지 않으며, 법원은 지불을 명한다고 판결하였다.

3. 법원 판결 내용 분석

1) 법원 판단에 대한 견해

본 사건은 신용장거래에서 개설은행의 운송서류 불일치에 대한 지급거절통지 시 UCP 규정에 근거하여 불일치사유를 기재함에 있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첫 번째 쟁점을 살펴보면, 제시된 운송서류가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해상선하증권인지 아니면 용선계약선하증권인지를 판단하는 사안이다. 그 동안 용선계약선하증권의 판단기준의 모호함으로 문제가 됐던 사안들이 많아 ICC 은행위원회에서 판단기준에 대한 어느 정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는 부분으로 국제표준은행관행 ISBP 745의 선하증권 편을 보면, 선하증권 상의 용선계약(charter party)에 따른다는 표시의 사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1) 선하증권의 표제가 "charter party bills of lading"과 같이 된 경우, (2) 선하증권에 "freight payable as per charter party(운임지급은 용선계약에 따름)"와 같은 표시가 있는 경우, (3) 선하증권에 "issued pursuant to charter party dated June 22,

15) 개설은행이나 확인은행이 본 조항의 규정에 따라서 행하지 못한다면 그 은행은 제시된 서류가 일치된 서류 제시가 아니라고 주장하지 못한다.

2013(2013년 6월 22일자 용선계약에 따라 발행됨)"과 같은 표시가 있는 경우, (4) 선하증권에 "to be used with charter parties(용선계약과 함께 사용됨)"와 같은 표시가 있는 경우, (5) 선하증권에 "charter party contract No.9488(용선계약서 번호 9488)"과 같은 표시가 있는 경우이다.[16] 즉, 화서공사에서 제시한 선하증권은 다음의 내용에 포함이 되므로 용선계약선하증권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한 법원의 판결은 타당하다.

두 번째 쟁점의 경우를 살펴보면, 은행의 서류검토 기준에 대한 판단으로 신용장의 내용과 제시된 서류의 문면상 불일치점을 판단하였는데, 신용장 상에 용선계약선하증권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없는 한 용선계약선하증권의 제시는 불일치 사항이 된다는 법원의 판결은 타당하다.

그러나 세 번째 쟁점사항의 경우, 1심과 2심 법원은 거절통지의 형식적 요건은 UCP 600 제16조 (c)항 (ⅰ)호와 (d)의 규정에 부합하나 거절통지의 내용은 UCP 600제16조 (c)항 (ⅱ)호와 (ⅲ)호의 규정에 근거할 때 효력을 갖추지 않은 통지로 판결하였다. 그러나 중소기업은행은 불일치사유에 대한 통지를 함에 있어서 MT 734양식을 이용하여 용선계약선하증권 제출되었다는 불일치 사유와 함께 적법하게 지급거절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1심과 2심 법원은 지급거절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자국 기업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이는 신용장거래의 준거법인 UCP가 강행법규가 아닌 임의법규로서 국제상거래에 이용되면서 신용장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 신용장의 해석에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반하는 편파적인 판결이라고 사료된다. 운송서류로서 신용장에서 요구되는 해상선적선하증권 대신 용선계약선하증권이 제출되었다면 이는 운송서류의 불일치로 은행의 정당한 지급거절 사유가 됨에도 불구하고 지급거절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완전하지 않다고 판결한 중국의 1심, 2심 법원은 국제상거래의 원활화를 증진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상반되는 판결을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앞에서도 언급했든 패소한 중소기업은행이 화서공사에 대금지급을 완료하고 수입자인 한일스틸을 상대로 한국법원에 소를 제기한 결과, 한국법원은 용선계약선하증권이 제출되었다는 불일치 사유가 해상선적선하증권 대신 용선계약선하증권이 제시되었음을 의미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이런 차이점을 하자로 해석하고 간주하는 것은 법원의 합리적인 판단이 결여된 것이고, 중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하는 법원이 자국기업을 위한 편파적인 해석은 바로 잡아야 하는 부분이라고 사료된다.

16) 대한상공회의소, ICC Korea, 한국금융연수원, "신용장통일규칙(UCP600)에 따른 국제표준은행관행 ISBP 745 공식번역 및 실무가이드", p.201.

2) 기업 및 은행에 대한 시사점

ICC는 UCP의 개정을 통해 국제상거래에 이용되는 신용장의 해석과 관련하여 통일성과 정확성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여 법원은 국제무역상과 국제은행들의 기대와 국제관행에 반영된 목적과 목표를 이행하는데 일치하는 그리고 국제무역에 있어서 신용장의 운영에 근거가 되는 해석을 행하는데 있어 언어적이고 자국법에 따른 접근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다.[17] 그러나 본 사건을 볼 때, 중국법원은 추후에 이루어진 한국법원에서의 판결과 다른 자국기업에게 우호적이고 아주 편파적인 판결을 내렸으며, 이는 중국 법원, 기업 및 국가의 신뢰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과의 거래에서 한국법원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중국기업들이 많이 있고, 이에 대해 중국법원에 강제집행을 청구하더라도 중국 현지 법원은 중국기업의 보호주의적 경향이나 비협조 등의 어려움으로 강제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은 역으로 우리나라 기업들과 은행들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18]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설은행인 중소기업은행은 패소판결을 인정하고 매도인인 화서공사에 대금지급을 하고 운송서류를 송부 받았다. 패소한 중소기업은행이 판결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지라도 강제집행을 진행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행은 판결을 이행하였고,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도 약 1,000만원(54,539위안)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하였다.

이렇듯 중국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의 경우 중국인이나 중국기업에게 유리한 해석이나 판결이 내려지고 있는 상황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과의 거래가 많은 우리나라 기업과 은행들은 중국법원의 편파적인 판결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첫째, 중국과의 무역거래에서 신용장을 개설하는 우리나라 개설은행은 본 사안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교훈 삼아 UCP 규정에 의거하여 지급거절통지를 진행해야 한다. 본 사안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지 않았지만 제5은행영업일 안에 지급통지를 전신으로 진행해야 하고, 용선계약선하증권의 판단기준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더불어 지급거절통지를 함에

17) 김철수, "신용장거래에서 거절통지의 형식적 요건에 관한 연구", 「무역연구」, 제9권 제6호, p.634.

18) 분쟁해결 수단으로 소송을 선택할 경우, 외국법원에서 내린 판결은 승인·집행되지 않을 수 있다. 1971년 2월 헤이그국제사법회의(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에서 통과되었으나 현재 극히 소수의 국가만이 이 조약에 가입하고 있다. 물론 중국과 우리나라는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 법원이 내린 판결이나 우리나라 법원이 내린 판결은 이 조약에 근거하여 각각 우리나라에서 또는 중국에서 집행될 수 없는 것이다. 〈출제: 문준조 외, "중국 진출기업의 분쟁사례와 법적용에 관한 연구", 대외무역정책연구원 p.760.〉

있어서 불일치(하자)의 내용 또한 자세하고 완전한 문언으로 기재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하자를 명시함에 있어서 실무에서 사용하는 신용장의 하자 명시 문구인 "… instead of …"의 일반적인 형태를 사용하는 것이 권고된다.

둘째, 신용장대금의 지급과 관련한 법률적 분쟁의 경우는 매도인(수익자) 내지 매입은행 및 신용장개설은행 사이에서 주로 발생한다. 법적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으로서 적용할 준거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개설은행과 매도인(수익자) 간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은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에 근거하여 당사자들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이다(당사자자치의 원칙).[19] 만약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준거법을 명시한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제사법 제26조 제2항에 근거하여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신용장과 관련된 소송이 어느 국가에 제기되는가에 따라 준거법 결정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신용장 개설 시 준거법에 관한 조항의 삽입에 대한 심도 있는 고려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20] 예를 들면, 신용장 개설 시 준거법을 한국법으로 한다면 신용장에는 개설은행 영업소 소재지법인 한국법의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신용장통일규칙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이고 신용장통일규칙이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될 것이다.[21]

셋째, 신용장의 독립성에 의거하여 신용장계약과 매매계약은 별개의 계약으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중재조항이 삽입된다. 그러나 신용장계약 체결로 인해 개설은행과 매도인·매입은행 간의 법률적 관계가 생겨나지만 이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신용장 안에서 찾아볼 수 없다. 본 사건처럼 매도인과 개설은행 간의 분쟁이 야기될 경우, 분쟁

19) 한편 신용장거래의 실무에서는 명시적으로 준거법을 선택하기 보다는 신용장 상에 국제상업거래소가 제정한 신용장통일규칙이 적용된다고 규정하는 문언을 삽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개설은행과 매도인(수익자)의 의사표시를 합리적으로 해석할 때, 양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를 신용장통일규칙에 따라 처리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또는 신용장에서 신용장통일규칙에 따른다는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도 수익자 등과의 신용장거래에 신용장통일규칙이 적용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다. 다수의 견해는 신용장통일규칙은 상관습법으로서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보고 있고, 신용장통일규칙의 법적 성질을 규범력을 가진 상관습법으로 파악할 경우, 신용장거래 당사자 사이에 통일규칙을 준거법으로 정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제사법 제25조에 따라 신용장통일규칙이 준거법이 될 것이다. 〈출처: 이정원, "신용장거래에서 개설은행과 매입은행의 주의의무와 준거법-대법원 2011.1.27. 선고 2009다10249 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중재연구」, 제22권 제1호, pp.73-74.〉

20) 신용장거래는 신용장의 기초가 되는 원인관계인 매매계약과는 별개의 독립된 거래로서 독립·추상성의 원칙이 지배하고 있으며, 신용장거래에 있어서 핵심적이고 특징적인 이행을 행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제사법 제26조에 따라 신용장거래의 준거법은 개설은행 영업소 소재지법이 준거법이 될 것이다. 〈석광현, 「국제사법 해설」, 지산, 제2판, 2003, p.219; 유중원, 「신용장-법과 관습(하)」, 청림출판, 2007, p.840.〉

21) 이정원, "신용장거래에서 개설은행과 매입은행의 주의의무와 준거법-대법원 2011.1.27. 선고 2009다10249 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중재연구」, 제22권 제1호, pp.72-73.

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그 결과를 예측하기란 쉽지 않으며 본 사건처럼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신용장 개설 시 신용장과 관련한 분쟁에 대한 대처방법이 사전에 합의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 대안으로 중재조항의 삽입이 필요하다. 중재의 경우 당사자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신청인주의 중재조항 삽입의 경우 상대국 법원에 대한 편견과 법관이 국제거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여 부적절한 판정이 행해질 위험이 있어 반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제3국 국제중재를 제시하여 합의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22] 그 대안으로 신용장과 관련한 국제중재의 하나로 국제신용장중재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Letter of Credit Arbitration: ICLOCA)[23]를 이용하면 될 것이다.

또한 신용장 개설 시 신용장 내용에 UCP를 준수한다는 문언과 함께 신용장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신용장분쟁전문위원회(International Centre for Expertise)[24]의 신용장 분쟁해결 전문성 규칙(Documentary Credit Dispute Resolution Expertise Rules: DOCDEX Rules)의 결정에 따른다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25] 신용장 개설 시 분쟁이 발생하면 신용장 분쟁전문위원회 결정을 따른다는 분쟁해결조항을 삽입하면

---

22) 강이수 · 박종삼, 「국제거래분쟁론」, 삼영사, 제4판, 2010, p.26.
1958년 6월 10일 뉴욕에 개최된 국제연합국제상업중재회의에서 채택된 New York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에 우리나라와 중국 모두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중재기구에서 내린 중재판정과 중국 중재기구에서 내린 중재판정은 각각 양국에서 승인 · 집행될 수 있다. 〈출처: 문준조 외, "중국 진출기업의 분쟁사례와 법적용에 관한 연구", 대외무역정책연구원, p.761.〉

23) ICLOCA는 ICC와 함께 신용장 분쟁 해결을 위한 규칙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관 중 하나로, 미국과 전 세계를 대상으로 기업, 법조계, 은행 대표자들과의 광범위한 컨설팅 후, 1996년 9월 Washington, D.C.에 설립되었으며, 런던과 중국에 계열사가 있다. ICLOCA는 신용장 분쟁에 관한 중재규칙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 규칙은 1976년에 채택된 유엔 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 중재규칙에 입각하고 있다. 〈출처: ICLOCA Rules of Arbitration, 1997, p.3.〉

24) 한낙현 교수는 "ICC의 신용장 분쟁해결규칙에 관한 비교연구"에서 전문가 국제의견센터로 칭하고 있으며, 송창순 변호사는 신용장분쟁전문위원회라고 칭하고 있다.

25) DOCDEX 시스템은 신용장과 관련한 분쟁의 신속한 해결과 저렴한 비용의 필요성에 답하기 위해 ICC는 은행계 및 중재계의 광범위한 코멘트와 개정 진행하고 있다. 1996년 11월 14일 ICC 은행실무위원회(Commission on Banking Practice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의 승인을 얻어 1997년 10월 DOCDEX Rules을 제정하였다. 2002년 DOCDEX Rules 개정을 통해서 ICC 전문가들에게 URC(Uniform Rules for Collections)와 URDG(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s)에 근거한 케이스를 결정하도록 허가하였다. DOCDEX 절차를 위한 ICC 전문가 그룹에는 90명의 전문가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들은 은행전문가와 은행 변호사들이다. 전문가들은 ICC National Committees에 의해 추천되고, 중재인으로서 자격을 심사 받아 선정된다. 사건이 접수되면 3명의 ICC 전문가들(chairperson, two experts)이 지정되고, 이들 전문가들은 30~60일의 합리적인 기간 내에 결정을 내린다. 이 결정은 추후 이 건을 가지고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증거서류로 사용이 될 수 있다. 15년 동안 DOCDEX에서 다룬 사건들이 110개가 넘으며, 이용자들은 실무적이고,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의 DOCDEX 프로세스를 이용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출처: Gary Collyer & Ron Katz, "Collected DOCDEX Decisions 2009-2012: Decisions by ICC experts on documentary credits, collections and demand guarantees",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2012.〉

신용장분쟁전문위원회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1997년 신용장 분쟁 전문 위원회가 설립되고 신용장 통일규칙과 함께 전문위원회 결정에 의한 분쟁을 해결하는 문구를 모든 신용장에 삽입하는 것이 검토 되었으나 신용장 분쟁 관련 사안들이 다양하여 전문 위원회에서 다룰 수 없는 법적 문제도 대두될 수가 있어서 일단 이것은 보류되었다.[26] ICC 은행위원회에서 다루는 신용장 관련 분쟁들은 법적인 쟁점이기 보다는 하자의 타당성 내지 해석에 관한 것으로 은행 전문가들의 결정으로도 가능한 사안들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런 하자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개설은행과 매입은행·매도인은 소송을 통해서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신용장 분쟁을 신용장분쟁전문위원회 결정에 따른다는 조항을 신용장 개설 시 삽입함으로써 분쟁을 소송이 아닌 전문 위원회 결정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빠른 시일 내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27] 물론 본 시스템에서 다룰 수 없는 법적 사안에 대해서는 소송에 의존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실무에서 사용되는 신용장을 살펴보았으나 어떠한 신용장도 이런 합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현재 몇몇 국가에서 분쟁해결 도구로 DOCDEX를 활용하고 있고[28], 큰 혼란 없이 사용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신용장 분쟁해결방식으로 충분히 고려할만 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신용장 개설 시 무역거래당사자들의 합의 하에 신용장에 해당 조항을 삽입하거나 국제신용장중재센터를 활용하여 분쟁을 해결한다는 조항을 삽입할 경우, 모든 신용장거래 당사자들은 그 조항에 적용을 받게 되므로 전문가들의 공정한 결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이 부분들이 현실화되기까지는 ICC 은행위원회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UCP 개정 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일 것이다.

---

26) 송창순의 외환교실 82-신용장 분쟁 전문 위원회 결정에 의한 분쟁 해결, 주간무역, http://www.jedam.net/newnews/print.php?uid=28451

27) U.S. $5,000이며 케이스의 복잡성에 따라 U.S. $10,000의 비용을 부담하면 된다. 그러나 소송비용의 경우, U.S. $10,000에서 U.S. $20,000와 변호사 비용까지 고려해야 한다. 〈출처: Chang-Soon Thomas Song(2013), "Sectoral Dispute Resolution in International Banking(Documentary Credit Dispute Expertise: DOCDEX)", Arizona Journal of International & Comparative Law, Vol.30 No.3, p.537.〉

28) 2010년에 6개의 새로운 케이스가 DOCDEX Rules에 의해 해결되었고, 12개 국가(Algeria, Belgium, China(Hong Kong), Denmark, Finland, France, Germany, India, Switzerland, Turkey, Ukraine and United Kingdom)의 당사자들이 본 시스템을 이용하였다. 〈출처: Chang-Soon Thomas Song(2013), "Sectoral Dispute Resolution in International Banking(Documentary Credit Dispute Expertise: DOCDEX)", Arizona Journal of International & Comparative Law, Vol.30 No.3, p.534.〉

Ⅳ. 결 론

본 연구는 한·중 신용장거래에서 불일치 서류에 대한 지급거절통지와 관련해서 중국법원의 UCP규정에 근거한 해석상의 오류를 고찰하고, 우리나라 기업과 은행들이 중국과의 신용장거래 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 논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룬 사례의 경우 매도인이 개설은행을 상대로 중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중국법원에서 매도인이 제시한 서류를 검토하여 하자(운송서류 불일치)에 대한 통지를 한 개설은행의 지급거절통지 절차가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였다. 중국법원은 개설은행의 서류검토는 합당하고 지급거절통지의 형식적인 절차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으나, 지급거절통지의 내용 상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무사고해상선적선하증권인데 실제로 매도인이 제출한 서류는 용선계약선하증권으로 이 두 서류가 불일치하다고 판단한 개설은행이 '용선계약선하증권이 제출되었음'이라고 불일치사유를 기재한 부분에 대하여 중국법원은 기재된 사항의 기준이 되는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거절통지가 UCP 600 제16조 (c)항 (ⅱ)(ⅲ)에 근거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중소기업은행의 패소판결을 내렸다. 비록 중국법원이 UCP 600에 근거하여 해석함에 있어 자국기업에 편파적인 판결을 내렸지만 한국중소기업은행은 이 판결을 이행하였고, 한국법원에 수입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고, 한국법원에서는 중국법원이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UCP 600에 근거할 때 명확한 통지라고 판결하였다.

이러한 편파적인 판결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기업과 은행들은 다음의 사항들에 주의해야 한다.

첫째,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판례가 확보된 부분이기 때문에 UCP 600에서 규정하는 내용 및 중국법원에서 언급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최대한 자세하게 불일치 사항을 기재함으로써 동일한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둘째, 무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경우, 소송이 아닌 중재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무역계약서에는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조항이 삽입된다. 그러나 신용장계약의 경우, 무역계약서에 근거하여 신용장을 작성하기는 하나 신용장의 독립성으로 인해 신용장계약과 무역계약은 별개의 독립된 계약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신용장계약 안에서 새롭게 생성되는 법률관계인 개설은행과 매입은행 또는 매도인(수익자)과의 관계에서의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합의 규정된 부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신용장과 관련한 분쟁은 소송에 의해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소송에 의한 판결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고, 무역이라는 특수한 관행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법관의 판결은 오류가 있을 수 있고, 판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 은행들은 신용장 개설 시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석을 위해 소송보다는 중재라는 무역의 특수한 절차를 이용하는 것을 제언한다. 개설은행은 신용장 개설 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중재를 활용할 것이라는 문언을 신용장에 삽입함으로써 신용장 당사자들을 법률적으로 구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공정한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와 더불어 준거법에 대한 조항을 삽입한다면 UCP에 근거하여 판단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법이 준거법으로서 적용이 가능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ICC 은행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 되어 SWIFT 신용장에 정형화된 코드로 삽입하는 것까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강원진(2007), “UCP 600 상의 불일치서류의 권리포기 요건과 적용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32권 제2호, pp.1-17.

강이수 · 박종삼(2010), 「국제거래분쟁론」, 대구: 삼영사.

김동윤(2013), “국제표준은행관행(ISBP 745)의 주요개정사항 분석과 시사점”, 「통상정보연구」, 제15권 제3호, pp.177-197.

김상조 · 이재달(2013), “신용장 서류심사의 일치성 판단기준-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한국항만경제학회지」, 제29권 제2호, pp.255-275.

김영훈(2003), “개설은행의 하자면제교섭권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28권 제1호, pp.241-261.

김용일(2013), “신용장거래에서 서류심사의 중요 논의에 관한 재 고찰”, 「통상정보연구」, 제15권 제4호, pp.241-265.

김재우(2008), “ISBP 2007 상의 복합운송서류 수리가능요건”, 「관세학회지」, 제9권 제3호, pp.269-289.

김종칠(2008), “화환신용장거래에서 물품명세의 일치성요건에 관한 사례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0권 제3호, pp.239-261.

김철수(2013), “신용장거래에서 거절통지의 형식적 요건에 관한 연구”, 「무역연구」, 제9권

제6호, pp.617-637.
김호(2014), “중국 민사심급제도에 관한 연구”, 「아주법학」, 제7권 제4호, pp.377-378.
박세운 · 허해관 · 정용혁 · 지정준 · 한기문(2013), 「신용장통일규칙(UCP600)에 따른 국제표준은행관행 ISBP 745 공식번역 및 실무가이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ICC Korea, 한국금융연수원.
문준조 외(2013), 「중국 진출기업의 분쟁사례와 법적용에 관한 연구」, 서울: 대외무역정책연구원.
박세운, “용선계약부 선하증권 심사와 관련 당사자의 위험요인”, The Banker, pp.77-85.
박석재(1998), “화환신용장 분쟁해결 규칙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8권 제1호, pp.353-375.
석광현(2013), 「국제사법 해설」, 서울: 박영사.
유중원(2007), 「신용장-법과 관습(하)」, 서울: 청림출판.
이정원(2012), “신용장거래에서 개설은행과 매입은행의 주의의무와 준거법-대법원 2011.1.27. 선고 2009다10249 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중재연구」, 제22권 제1호, p.72-73
이천수(2000), “화환신용장거래에서 전통적인 서류심사기준하의 서류일치성 요건”, 「무역학회지」, 제25권 제3호, pp.59-82.
이천수(2009), “신용장거래에서 불일치서류의 거절통지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제22권 제2호, pp.709-725.
전순환(2005), “ISBP상의 복합운송서류의 일치성에 관한 심사기준”, 「통상정보연구」, 제7권 제4호, pp.219-243.
조현정(2008), “UCP 600의 제14조 서류심사에 관한 연구”, 「경영경제」, 제41권 제1호, pp.287-307.
조현정(2009), “UCP 500과 UCP 600에서 서류심사 규정의 차이에 관한 연구-판례중심으로”, 「한국사회과학연구」, 제28권 제1호, pp.333-355.
채동헌(2002), “신용장 거래에 있어 원본서류의 판단기준과 서류 심사에 대한 엄격일치의 원칙-대상판결: 대법원 2002.6.28. 선고 2000다63691 판결”, 「저스티스」, pp.307-331.
한상현(1998), “ICC의 신용장 분쟁해결규칙에 관한 비교연구”, 「창업정보학회지」, 제1권(창간호), pp.33-57.
Song, C. S. T.(2013), “Sectoral Dispute Resolution in International Banking(Documentary Credit Dispute Expertise:DOCDEX)”, *Arizona Journal of*

International & Comparative Law, Vol.30 No.3, pp.529-558.

Chung, S. I.(1995), "Developing a Documentary Credit Dispute Resolution System: An ICC Perspective", *Fordham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19 Issue 4 pp. 1349-1378.

Bergami R.(2007), "Will the UCP 600 Provide Solutions to Letter of Credit Transactions?", *International Review of Business Research Papers*, Vol.3 No.2, pp.41-53.

Rosmawani C. H.(2013), "Principle of Strict Compliance in Letter of Credit(LC): Towards a Proper Standard of Compliance", Legal Network Series, CLI Law.

Collyer G. & Katz R.(2012), *Collected DOCDEX Decisions 2009-2012: Decisions by ICC experts on documentary credits, collections and demand guarantees*,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nternational Center for Letter of Credit Arbitration, Inc.(1997), *International Center for Letter of Credit Arbitration, Inc.(ICLOCA) Rules of Arbitration*, International Center for Letter of Credit Arbitration, Inc..

UCP 600(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서울고등법원 2012.11.8. 선고 2011나00858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113438 판결

中华人民共和国江苏省高级人民法院 (2009) 苏商外终字第0003号民事判决

中华人民共和国无锡市中级人民法院 (2009) 锡民三初字第56号民事判决

송창순의 외환교실 82-신용장 분쟁 전문 위원회 결정에 의한 분쟁 해결, 주간무역, http://www.jedam.net/newnews/print.php?uid=28451

Payment Refusal against Discrepancy in Transport Document under L/C Transaction

Jung-Sun Lee

Abstract

The study attempts to verify the case related to the notice of payment refusal by issuing bank regarding discrepancy in transport document under L/C(Letter of Credit) transaction. Considering the high portion of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Korean companies and banks in L/C transaction should be careful about many unpredictable situations.

The case of this study is that Chinese seller(beneficiary) initiated a civil suit against Industrial Bank of Korea to Chinese court and Chinese courts in the first and second trials judged that the notice of payment refusal by Industrial bank of Korea doesn't satisfy Article 16, (c) (ⅱ) (ⅲ) in UCP 600. However, Industrial Bank of Korea implements the judgement even though the judgement is highly biased to Chinese seller. Considering the judgement by Chinese courts, the study suggests some countermeasures to Korean companies and banks which opened L/C.

First, the issuing bank should describe the contents of discrepancy specifically based on Article 16, (c) in UCP 600.

Second, it is necessary to insert a clause regarding governing law in the L/C contract like sales contract.

Third, considering the biased judgement by Chinese court and difficulty in execution of foreign judgement in China, it is recommended to using arbitration as a method of dispute resolution such as ICLOCA and DOCDEX Rules which are international system operated by international instruments because it has legal effects to parties in L/C contracts if the issuing bank inserts arbitration clause in L/C.

〈Key Words〉 UCP 600, Payment Refusal, Bill of Lading, Charter Party B/L, ISBP 745, International Center for Letter of Credit Arbitration (ICLOCA), International Centre for Expertise, Documentary Credit Dispute Resolution Expertise Rules (DOCDEX Rules)